

울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115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분양받을 사람에 대한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임직원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D와 함께 (주)E라는 시행사를 설립하고,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면서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업이 성공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다. 피고들은 D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위 E의 사무실에서 원고 등 64명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F 및 G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H에서 I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H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면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회사가 토지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H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H, 시공사 I, 시행사 (주)J’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의향서는 효력이 상실된 것이었고,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은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2. 16. 경산시 F

토지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원고를 포함한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4,998,042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가 내지 라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9. 4. 18. 피고 B에게 징역 5년, 피고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상당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D의 말을 믿고 시행사를 설립하여 시행사업을 위한 회사 운영을 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는 투자 수익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수익금을 얻게 되고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토지 매입 후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원고가 매입한 토지는 주식회사 E가 매입도 하지 않은 토지인데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교부하였던 것인바, 원고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위 인정사실 가 내지 라항의 기재와 달리 피고들이 D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D에게 속아서 단순히 시행사를 운영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들과 D의 공모범행은 원고를 포함하여 64명이나 되는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 점, 피고들의 사기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대산